

연금시장리뷰 28호

연금의 진화, 그리고 미래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배준호 교수(031-379-0543, bjh5432@unitel.co.kr)

□ 연금의 진화, 그리고 미래

인류가 연금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활용해 온 것은 2 천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군인과 왕, 귀족 주변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신부 등 성직자 대상의 코로디(corrody)라는 사적 퇴직급여가 있었다. 코로디로 생활하는 '코로디언'은 당시 노후 유한계층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을지 모른다.

16 세기 말에는 영국 해군에서 체계적 직역연금인 채텀금고가 설립되어 사망 군인의 유족, 부상자, 퇴역자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18 세기 후반에 남북전쟁 부상자를 지원 하는 연금을 도입하였다. 이후 이들 제도는 공무원, 교원으로 확산되어 오늘의 군인, 공무원, 교원 연금의 원형이 되었다.

1653 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톤티연금(tontines)도 주목할 제도다. 체계화된 사적연금의 한 유형으로 로렌조 톤티가 고안하였으며 생명보험의 시초가 된 제도다. 정부, 도시, 개인 등이 톤틴을 설립하면 투자자가 가입하는데 오래 살수록 수익이 컸다. 공공 프로젝트나 군자금 조성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유사한 제도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시들해졌다.

근대적인 사회보장연금(공적연금)은 1889 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정규 생산직근로자와 저소득 사무직근로자가 대상인 노령·장애보험이 그것이다. 지금의 연금과 비교하면 적용대상, 급여수준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기본골격은 지금과 아주 흡사하다. 도입목적은 근로자 복지개선보다 당시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던 사회민주당 급진주의자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컸다.

이후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공적연금을 도입하였는데 대부분이 일정 규모 적립기금이 없는 부과방식 연금으로 인구고령화에 취약하다. 적립기금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 정도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험에 노출되어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부분적 이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비중을 늘리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처음에는 기업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사연금은 17 세기 이후 일본에서 시행된 노령와케가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서구에서는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확정기여형 자사연금이 초기 제도다. 현대식 퇴직연금은 미국이 세제우대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1942) GM 이 이를 채택하면서(1952) 보급이 확대되었다.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은 저출산율, 장수화, 저성장율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아 연금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후세대와의 연대(solidarity)에 의존하여 급여지급 재원을 조달하는 성격이 강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내외 시장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방식이다. 후세대 숫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세대와의 연대 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원마련 비중을 키워야 하는 것이 주요국 연금제도가 처한 현실이다.

I. 왜, 연금인가

○ 퇴직후 20~30 년의 여생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둔 이들은 소수

- 60 세 이후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지만 이들의 노후준비는 제각각
- 2011 년 기준으로 60 세 전후 퇴직시점에서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 시가 15 억원 이상의 토지, 빌딩, 아파트, 단독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예정자
 - 5 억원 이상의 금융자산 소유자
 - 일정 수준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수급자 등
- 이들은 65 세 이상 노인 550 만명 중 20%에 미달하며 나머지 80% 이상은 노후대비가 불충분

○ 고가의 부동산, 고액 금융자산 없는 이에게는 연금이 버팀목

- 65 세 이상 노인중 생활의 안정도가 높은 그룹 중 하나가 다소간의 재산을 지니고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을 받는 이들로 2011 년 기준 약 27 만명 정도로 추정
 - 이들의 가족까지를 고려하면 그 숫자는 40 만명 정도로 늘어남
 - 2010 년 기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퇴직급여) 공무원 170 만원, 군인 270 만원, 사학 260 만원 정도
- 65 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숫자는 많지만 연금액은 월 50 만원에도 미달
 - 향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더라도 월 연금액은 70~100 만원 수준으로 예상

○ 국민연금의 미흡한 노후소득보장기능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필요

- 65 세 이상의 퇴직자 다수는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이 연금으로 노후대비가 불충분할 전망이므로 이를 보조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필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평균 50~100 만원 정도의 연금이 더해져야
- 2011 년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대상자의 30%에 미치지 못함
- 2020 년대 이후 노후빈곤자 증가로 막대한 재정지출 소요예상
- 정부와 기업은 세제상 유인조치 강화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가입율을 높여야

- 이하 Ⅱ절에서 근대이전의 연금, Ⅲ절에서 근대 이후의 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IV절에서 미래의 연금상을 전망해 봄

Ⅱ. 근대 이전의 연금

1. 서구의 연금

- 초기 연금 유형은 고대 바빌론과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

- BC 562 년경 유대왕 여호야긴이 37 년에 걸친 바빌론 포로생활후 방면되어 바빌론왕 에월므로닥으로부터 종신연금을 지급받음(구약성서 열왕기하 25 장 27~30 절)

- BC 400 년경 그리스 웅변가 리시아스가 군인연금 중단에 항의하고 읍소

- 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BC495~429)가 전사자 자녀에게 유족연금 지급 언명

- AD 6 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군인연금고 만들어 퇴역군인에게 퇴직수당 지급하거나 토지를 나눠줌

- 재원은 황제 부담금과 공매나 상속에 대한 과세로 충당
- 퇴직수당은 20 년 현역복무와 5 년 예비역 복무자에게 3 천 데나리가 지급

- 중세시대에는 신부, 군인, 공직자, 왕과 귀족 측근 등에게 제한적으로 연금이 지급

- 급여수준은 퇴직신부의 경우 재직시 소득의 1/3 정도

- 캔터베리이야기의 작가인 영국 시인 초서(1343~1400)는 30 대에 연금 수급개시

- 체계화된 사적 퇴직급여 제도인 코로디(corrody)가 영국 중심으로 시행

- 근로기에 수도원 등의 제도 관리기관에 일시금 납부후 퇴직후 식음료, 주택, 장터공간, 현금 등을 일정기간 지급받는 플랜

- 급여 수급자인 '코로디언' 들은 당시 선망의 표적이었을 가능성 있음

- 서비스수준은 납부액에 따라 달라 수준급의 수도승코로디, 낮은 하인코로디가 있음

- 수도원은 상당한 자산을 지녀 지속성과 안전성면에서 신뢰도 높은 기관이었고 1538 년, 헨리 8 세의 철권통치로 수도원 해체시까지 제도 존속

○ **1590 년 로마이후 체계화된 연금이 영국에서 등장**

- 1588 년 대스페인 전쟁 사망자, 부상자 대상의 영국 해군연금인 채텀금고 설립
- 이후 흐트러진 제도를 1670 년, 찰스 2 세가 다시 강화하여 시행
 - 1667 년 대네덜란드 해전후 퇴역자에게 퇴직시 기본급의 50%를 연금으로 지급

○ **체계화된 사적연금의 하나로 1653 년 프랑스에서 고안된 톤티연금(tontines) 있음**

- 나폴리의 의사이자 은행가인 로렌조 톤티(Lorenzo de Tonti)가 루이 14 세의 지시로 고안한 제도로 근대 생명보험 탄생의 계기가 됨
- 정부, 도시, 개인 등이 톤틴을 설립하면 가입자가 일정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종신 배당받는데, 사망시에는 생존 가입자에게 권리가 넘어가 최후 가입자 1 인에게 모든 배당금이 귀속. 그가 사망하면 모든 자산은 정부 등 설립기관에 귀속
 - 오래살수록 유리한 제도로 다른 가입자를 죽이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나폴레옹과 로베스피에르가 '남의 죽음을 반기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함
- 톤틴은 공공 프로젝트나 군자금 조성에 사용
 - 루이 14 세는 1689 년 유럽동맹군과 싸울 군자금 140 만 루브르를 톤틴으로 조달
-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이후 장기간 지속되다가 제 1 차 세계대전후 시들해짐

2. 우리의 연금

○ **국내 도입된 최초 연금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부 군인과 공무원 대상의 은급임**

- 고려 말 조선초 70 여년간 시행된 과전(科田 1391~1466)이 퇴직급여 성격 지님
 - 과전은 맹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자세록(仕者世祿) 즉 벼슬한 이에게는 당대는 물론 대를 이어 녹봉을 준다는 개념에 입각
 - 이는 전시과(田柴科)가 사유지화하여 상속되자 기강확립 목적으로 도입
 - 과전은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에게 있는 사전
- 과전은 관료와 유족의 소득보장 외에 일가소득보장 성격을 지님

○ 이후 정부재정 압박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연금제도 없음

- 서구 연금제도가 군인과 유족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시작하여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체계화되는데 비해 우리는 그같은 모습을 찾기 힘들
- 역사적으로 무신과 군인을 홀대해온 전통을 연금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Ⅲ. 근대 이후 연금

1. 서구의 연금

○ 근대식 직역연금은 미 연방정부의 독립전쟁 상이군인 연금(1789)이 시초

- 이후 영국에서 국가공무원(1810), 지방공무원(1884), 경찰(1890년), 교원(1898년) 대상 연금 설립
- 미국은 뉴욕정부 경찰관(1857)이어 다른 지방정부 경찰관, 소방관, 교원 연금 창설

○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장연금은 독일에서 최초 도입

- 비스마르크(1862-1890) 재상이 1889년, 정규 생산직근로자와 저소득 사무직근로자 대상의 노령 장애보험이라는 사회보장연금(공적연금) 도입
 - 강제가입의 기여형으로 퇴직이 수급요건이 아니므로 고령근로자 임금보조금 성격
 - 노사가 기여금내고 정부가 정액 보조금 지원, 70세(1916년, 65세로 인하) 이후 퇴직과 무관하게 확정급여형 연금 지급
 -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족양연금 없고 유족연금 없음
 - 정규직 대상으로 수급자 대부분은 남성
- 도입목적은 근로자 복지개선보다 사회민주당 급진주의자 주장 견제위한 정치목적

○ 독일은 연금과 함께 질병보험(1883), 산재보험(1884), 실업보험(1927) 도입하여 세계 최초의 근대식 사회보험 체계 완성

- 산업활동이 독일 이상으로 활발했던 영국의 유사 연금도입이 1925년이므로 비스마르크 조치는 매우 선구적 조치로 평가
 - 영국은 건강보험(1911), 실업보험(1911), 노령연금(1925), 유족연금(1925)으로 독일보다 늦음

○ **독일의 연금 도입후 30 여년 사이에 주요선진국으로 제도 확산**

- 유럽지역은 프랑스(1910), 스웨덴(1913), 이탈리아(1919), 네델란드(1919), 영국(1925)
- 미주지역는 아르헨티나(1904), 캐나다(1927), 미국(1935)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뉴질랜드(1898), 호주(1908), 일본(1941), 중국(1951)
- 뉴질랜드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 기여 없이 조세로 연금지급

○ **공적연금 도입 시점과 경제발전 단계간에는 상관 관계가 약함**

- 미국이 남아프리카와 브라질(1923), 그리스(1934)보다 늦음
- 조기 도입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적용대상이 전 인구의 10% 이하가 다수
 - 많은 경우에 도시 사무직근로자나 공무원 등으로 한정
-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식민지 종주국의 공무원연금이 모델이 됨
 - 우리의 공무원연금(1960)도 일본의 구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연금(1948)과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연금(1958) 등이 모델

○ **공적연금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은 1945 년 이후 넓어지고 인상됨**

- 독일의 경우 적용대상은 도입초기 전근로자의 40%수준, 1895 년에 54%, 1950 년대에 60% 중반대, 1980 년대 중반에야 대다수 근로자로 확대
- 영국의 경우 연금지출의 대 GDP 비율이 1910 년의 0.44%, 1920 년대 후반 1%, 1940 년대 후반 2%, 1980 년대 초반 6%, 2000 년대 중반 9%대로 증가
 - 이같은 증가배경에는 적용대상 확대, 급여수준 인상, 제도 성숙, 장수화가 있음

○ **근대적 퇴직급여의 전신으로 일본에서 17 세기 이후 시행된 노령와케가 있음**

- 상가에서 오래 일한 종업원 독립시 노령을 나눠주는 것으로 퇴직급여 성격
 - 노령은 가게출입구에 드리워진 (천)발이며 노령와케는 다른 장소 개업시 상가 노령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골손님 배분, 프랜차이즈점 개설의 의미가 있음

○ 근대적 퇴직연금은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확정기여형 자사연금(1875)

- 이후 P&G 가 1887 년에 유사 연금을 내놓으면서 우량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자사연금이라는 한계
- 금융기관 매개의 현대적 퇴직연금은 미국의 세제우대형 퇴직연금 도입(1942) 이후
 - 미국 GM 월슨회장의 퇴직연금 창설 제안에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동의(1952)하면서 보급

2. 우리의 연금

○ 최초의 근대식 연금은 일제강점기 은급

-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리로 일한 사람에게 퇴직후 은급(恩給)이 지급
- 은급은 일본이 육군과 해군 퇴역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1875 년에 도입. 1884 년부터 군인외 문관에게도 시행
- 일제강점기 중 군인, 군속, 공무원으로 근속한 한국인 은급수급자에 대한 통계 없음
 - 은급대상이 군인과 군속, 관(官)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교직원 포함)이고 최단근속기간이 17년(경찰과 교정직 12년)이므로 해방전 수급자는 소수였을 것으로 추정

○ 해방후 최초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 1960년 도입

- 1950 년대에 논의가 시작된 공무원연금이 우여곡절끝에 1960년 1월 시행됨
 - 국무원 사무국 인사과 해외연수파 출신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법제화에 착수하여 1959년 4월 법안이 마련되어 국무회의 상정
 - 그런데 국무회의는 논의를 유보하고 국무원 사무국 인사국장 등 7인 소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여 축차심의토록 함
 - 7인 소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1959년 10월에 국회 제출되고 그해말 국회통과하여 1960년 1월부터 시행
 - 국무원사무국에 연금기획과, 급여과, 기금과 신설, 연금특별회계는 재무장관 관장

○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 1974년에 국민복지연금이 도입예정이었으나 제1차 석유위기로 시행보류되다가 1975년에 무기연기
 - 시행 앞두고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 국세청에 연금징수국을 신설한 바 있음

- 보건사회부 검토과제를 경제기획원과 KDI 등 박정희 대통령 주변 엘리트들이 중화학공업 육성자금원으로 또 제 9 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카드로 주목하면서 추진됨

○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 국민복지연금이 국민연금으로 개명되고 1988 년 1 월부터 국민연금 시행
- 1977 년에 도입한 의료보험의 적자로 전두환 대통령 등은 국민연금에 부정적
 - 학자, 전문가의 설득으로 전대통령이 입장바뀌 1986 년 8 월 11 일 국민연금 실시,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복지 3 대 정책을 발표
- 적용대상은 도입 당시 10 인이상 사업장, 1992 년 5 인이상 사업장, 1995 년 7 월 농어촌지역, 1999 년 4 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11 년 만에 전 국민이 적용됨
- 보험료율은 도입 초기인 1988 년부터 1992 년까지는 3%, 이후 5 년간 6%, 1998 년부터 9% 적용
- 급여수준은 초기 40 년가입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70%가 1998 년말 60%, 2007 년 7 월 40%로 낮춰짐(단 2028 년까지 단계적으로)

○ 정쟁의 타협물인 어정쩡한 기초노령연금

- 2008 년 1 월 1 일 시행된 제도로 기초연금 구상을 대폭 축소한 공공부조의 일종
- 65 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못받거나 받아도 전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방편적 공공부조 조치
 - 2008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의 67%인 342 만명에게 정액급여 지급
 - 급여액은 소득수준과 부부, 독신에 따라 다르고 전액수급시 2010 년 기준 독신 9 만원, 부부 14 만 4 천원
- 급여액이 작아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무연금, 저연금 노인세대 소득보장 강화 효과가 별로 없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 별도의 보충연금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퇴직연금보다 일찍 도입된 개인연금

- 금융실명제(1993 년 8 월)에 전격 시행되면서 가계저축에 미칠 마이너스 파급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세제우대 혜택이 큰 개인연금이 도입

- 개인연금은 도입 초기 가입자에게 큰 인기를 얻어 한 때는 열 가구 중 네 가구가 가입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음. 1997 년의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으로 많은 가입자가 계약 해지
- 2001 년 2 월에 연금저축이라는 신 개인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매력으로 신규가입자가 줄다가 2000 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임
 - 50 세 이상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3.9%에 불과하며 현 가입률 유지시 개인연금 수급자는 2030 년경에도 동일 세대원의 10.4% 수준에 머물것으로 추정
- 제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강화, 금융상 우대조치 도입으로 활성화가 과제

○ 느즈막히 도입된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보다 늦은 2005 년말에 도입됨
 -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1953 년 5 월에 도입된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음
-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 못지 않게 퇴직후 일정기간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해 왔음
 - 공기업, 대규모 직장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 등 두툼한 제도상 보장장치가 있어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감지하기 힘들었음
- 그런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정퇴직금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민간 근로자가 50%에 달하면서 퇴직연금 도입이 마침내 도입됨
- 퇴직연금 가입이 임의가입이므로 가입율은 아직 높지 않음
 - 공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음
 - 민간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아직도 퇴직금 제도 고집 경향 보임
 - 퇴직금 고집 이유는 퇴직금이 퇴직무렵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비해 퇴직연금은 전 재직기간 급여를 고려하거나 시장수익률로 증식되기 때문
- 도입후 5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적립금은 매년 2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0 년 11 월말 기준 적립금 잔고는 22 조 3,610 억원이며 2010 년말 기준으로 30 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됨
 - 이같은 급격한 증가 전망은 2010 년말로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추가불입이 금지되면서 동 보험·신탁의 적립금 잔액 (18 조 9 천 9 백억원, 2010.9) 중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도입사업장수는 2010 년 11 월말 기준으로 89,843 개소, 가입 근로자수는 198.8 만명으로 5 인 이상 사업장(511,794 개소)의 17.6%, 상용근로자(737.7 만명)의 24.5%에 해당
 - 근로자 300 인 이상 대기업의 37.9%가 도입
- 퇴직연금 사업자는 53 개 금융회사(은행 15, 생보 13, 손보 8, 증권 17)이며 시장점유율은 은행권(53.1%)이 가장 높고 생보(27.4%), 증권(13.0%), 손보(6.5%)의 순임
 - 은행 및 증권사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생보사 점유율이 하락세인데 배경에는 은행의 전국적인 영업조직력, 증권사의 다양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제시와 공격적 영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6.6%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DC)이 20.4%, 개인퇴직계좌(IRA) 10.6%의 순임
 - 확정급여형이 주류를 점하는 이유는 연공제를 택한 대기업 등의 근로자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여 급여수준이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을 선호하기 때문

IV. 미래의 연금

1.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 저출산율, 장수화, 저성장율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음

- 연금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예상
- 2011 년 현재 공적연금이 약속하고 있는 연금급여를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보완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적연금은 후세대와의 연대(solidarity)에 의존하여 급여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성격이 강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후세대보다 국내외 시장에 의존하여 급여지급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임
 - 후세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세대와의 연대 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원마련 비중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짐을 떠받칠 버팀목으로 3개의 기둥이 필요함

-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핵심기둥, 퇴직연금이 그 다음 중심기둥, 개인연금 등 각종 저축과 자녀이전소득이 보조기둥임
 - 이들간의 역할 분담은 중간소득자의 경우, 핵심기둥이 50%~60% 수준을 맡아주고, 그다음 중심기둥이 30%, 보조기둥이 10~20%의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저소득자는 핵심기둥의 역할이 80~90% 수준으로 상향되고, 고소득자는 보조기둥의 역할이 5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 급여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저소득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운영방식 변경(적용대상 축소와 급여수준 인상),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운영, 다양한 공공부조형 소득지원정책으로 소득을 보충해주는 방안 모색

2. 달라질 모습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 장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 이러한 변화에는 규제와 유인 조치를 활용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기동력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임

○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요망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으로

-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국회제출 법안에 기포함)
- 적립금 운용체계의 단계적인 자율규제방식 전환
- 수급권 보호 장치의 단계적 강화
 - 단기적으로 채권자우선변제 적용과 퇴직금 대상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 범위 확대
 -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지급보증공사 설립
- 감시기능체계 개선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수탁기관간 이해충돌 문제 해소
 -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

○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요망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으로

- 세제상 우대조치의 추가적 확대
 -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액을 300 만원에서 400 만원(2010 년말 세법개정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확대
 - 중저소득층 대상의 소득공제한도액 별도 운영방안 검토
 - 소득공제한도액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개인연금 한도액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차등화하여 노후대비가 불충분한 자영업자 계층의 가입을 촉진
 - 장기가입자에게 수익률상 추가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보조금 지원 조치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정부가 불입액에 대응한 보조금 지원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배준호 교수(031-379-0543, bjh5432@unitel.co.kr)